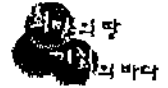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국 토 해 양 부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확대 시행

1. 우리부는 '09.2월부터 소속·산하기관 발주공사에 대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기일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발주자가 확인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요청하는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 동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를 직불현장에 대하여는 자재·장비대금까지 확대 시행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내역까지 확인토록 하고자 하오니 각 소속·산하기관에서는 하도급대금 등의 미지급 공사현장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적발 및 조치건수,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대금의 미지급 내역(금액 포함) 등을 포함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11.7월 기준 실적('11.6월 기준 실적은 종전 양식으로 제출)부터는 변경된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하도급대금 지급확인제도」에 따른 결과보고는 5개 국토관리청에서 관할지역내 소속·산하기관의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15일까지 제출하시고, 소속·산하기관은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점검 및 조치결과를 매월 10일까지 기일을 엄수하여 관할지역 국토관리청에 제출(“붙임3”은 '11.7.1까지 국토부 건설경제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산하기관에서는 동 문서를 각 지역본부에 이첩시행하여 제도 시행에 적극 참여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확대 운영 1부
- 2.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실시 결과보고 양식 1부
- 3.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담당자 연락처 양식 1부. 끝.

국토해양



수신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춘천지방국토관리청장, 의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여수지방해양항만청장,
 마산지방해양항만청장, 동해지방해양항만청장,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 목포지방해양항만청장,
 포항지방해양항만청장, 평택지방해양항만청장,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 대신지방해양항만청장,
 서울지방항공청장, 부산지방항공청장, 한국도로공사사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
 사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한국철노시설공단이사장, 부산항만공사사장, 인천항만공사사장, 울
 산항만공사사장, 한국공항공사 사장, 인천공항공사사장

시무권대우 **이회돈** 행정시무관 **정용연** 과장 **이문기** 전결 06/30

협조자

시행 건설경제과-2980 (2011. 06. 30.) 접수 / http://www.mltm.go.kr
 우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 loehd@mltm.go.kr / 대국민공개
 전화 02-2110-6290 전송 02-503-6439

Me First(내가 먼저) 녹색은 생활이다

하도급대금 지급 확인제도 확대 운영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하도급자가 수령한 하도급 대금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하도급 대금의 대물변제 및 어음지급 등을 방지하는 제도

□ 원도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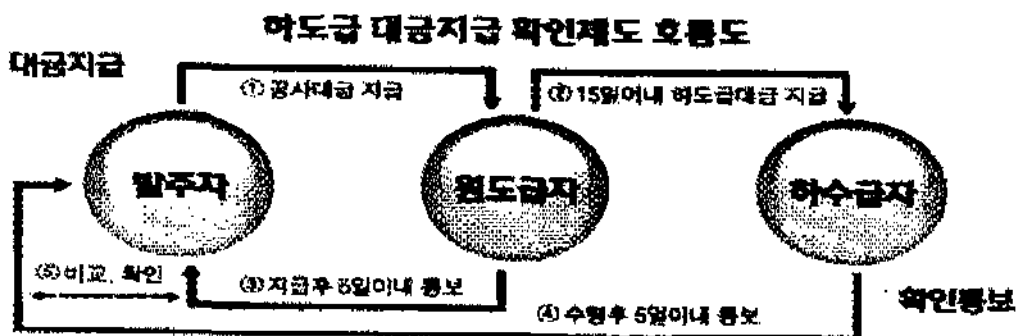
- 공사대금 수령시 15일 이내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 이내 통보

□ 하도급자

-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수령후, 발주자에게 수급내역을 5일 이내 통보

□ 발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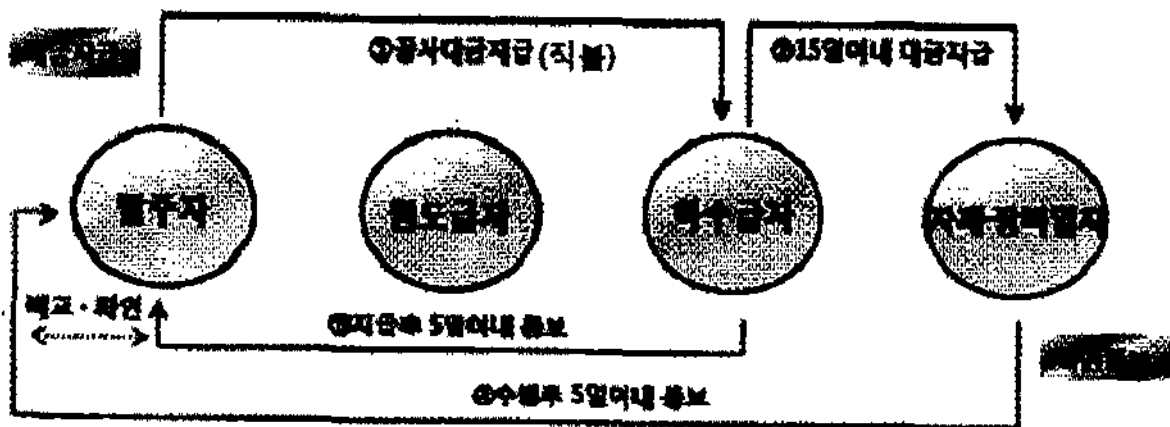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가 제출한 대금지출자료 및 수령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하도급대금의 현금지급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금지급의 불법여부를 확인



《하도급대금 직불현장의 경우(확대 시행)》

-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과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한 자재·장비대금 내역을 발주자가 직접 비교·확인하여 자재·장비대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
 -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수령시 15일이내 자재·장비업자에게 자재·장비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자재·장비업자) 하도급자로부터 자재·장비대금 수령후, 발주자에 수급내역을 5일이내 통보
 - (발주자) 하도급자가 제출한 대금지급자료와 자재·장비업자가 제출한 대금수령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자재·장비대금의 현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금지급의 불법 여부를 확인

하도급 대금지급 확인제도 흐름도 (직불의 경우)



순서도

발주자	조치 사항
<p>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지급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 대금 지급계좌 사전파악 · 원도급자의 기성금 지급 요청시 하도급자 기성금액 및 자재·장비대금의 구분 여부 확인 · 기성대금 지급은 원도급자가 기통보한 계좌로 지급 * 기성금 지급시 SMS 문자로 하도급자에게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



원도급자	조치 사항
<p>하도급대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에게 기성금 지급요청시 하도급자별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구분 · 하도급업체, 대금지급 현황 등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하도급대금 지급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 이내 통보 * 업체명, 지급금액, 지급일시, 지급계좌, 지급확인 가능서류 * 대금지급시 SMS 문자로 자재·장비업자에게 지급사실을 통보



하도급자	조치 사항
<p>하도급대금 수령, 자재·장비대금 지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도급업체명, 계좌, 대금수령현황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자재·장비업체명, 계좌, 자재·장비대금 지급내역 구분 · 하도급대금 수령후 발주자에게 수금내역을, 자재·장비대금 지급후 발주자에게 지급내역을 5일 이내 통보 *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자재·장비업자	조치 사항
<p>자재·장비대금 수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재·장비업체명, 계좌, 대금수령현황을 발주자에 사전통보 · 대금 수령후, 발주자에 수금내역을 5일 이내 통보 * 업체명, 수령금액, 수령일시, 수령계좌, 통장사본



발주자	조치 사항
<p>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지급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내역과 하도급자 및 자재·장비업자의 수금내역 확인 · 위반사항 적발시 시정조치, 소관 국토관리청에 통보 및 지자체에 행정처분 요청